

제359회 임시회
2017. 10. 17.(화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김영주 의원 등 6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9월 29일
- 회부일자 : 2017년 9월 29일

3. 개정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지역보건법」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항 및 문구를 정비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띄어쓰기에 따른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(안 제1조)

- 「지역보건법」 제3조 ⇒ 제6조
- 「지역보건법 시행령」 제2조 ⇒ 제3조

나. 위원회 위원 구성 대상 정비 (안 제2조)

- 「지역보건법」 제6조제3항 개정에 따른 정비

다. 위원회 기능 정비 (안 제3조)

- 「지역보건법」 제6조제1항 개정에 따른 정비

라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위촉 해제 사유에 대한 문구 수정 및 추가 규정 (안 제6조)

- 용어정비 : ‘해촉’ ⇒ ‘위촉 해제’
- 위촉해제 사유 추가 :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,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지역보건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.
- 안 제1조는 인용조항인 「지역보건법」 ‘제3조’ 를 ‘제6조’ 로, 같은 법 시행령 ‘제2조’ 를 ‘제3조’ 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한 것으로 타당함.
- 안 제2조는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로 함)의 구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 및 임명하는 위원 대상을 「지역보건법」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비한 것임.
-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 「지역보건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비한 것임.
- 안 제5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‘해촉’을 순화용어인 ‘위촉 해제’로 변경하고, 위촉 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한 것임.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비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절차 상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친 바, 타당하다고 사료됨.